예천군고시 제2012-664호

2013년 건물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·고시

「지방세법시행령」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 건물 ·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.

2012. 12. 31.

예 천 군 수

다 음

1. 건 물 : 2013년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(별책)

2. 기타물건 : 201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(별책)

4. 열람장소 : 예천군청 재무과, 읍 · 면사무소

5. 시행시기 : 2013. 1. 1부터 시행